

탄천 일반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(변경) 승인 및 지형도면 고시

1. 「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33조 따라 탄천일반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을 변경 승인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하며,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 고시합니다.
2. 관계도서는 충청남도 공주시 지역경제과(☎041-840-8286)에 비치하고, 이해관계인과 일반인에게 보입니다.

2020년 11월 30일

충 청 남 도 지 사

1. 산업단지의 개요

가. 단 지 명 : 탄천 일반산업단지

나. 관리기관 : 공주시장

다. 조성목적

- 충남 남부지역의 거점 산업기반을 마련하여 수도권 및 중부 내륙 산업단지와의 연계 도모
- 지역산업기반 구축 및 고용창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유도
- 산발적인 기업유치로 인한 산림과 농지의 훼손 방지를 통한 환경 피해 최소화 및 난개발 방지

라. 단지개요

- 위 치 : 충청남도 공주시 탄천면 안영리·덕지리 일원
- 면 적 : 996,609.4㎡
- 사업시행자 : 충청남도개발공사 사장
- 개 발 방 법 : 공영개발방식
- 사 업 기 간 : 2007년 ~ 2014년 02월(준공)

마. 추진경위

- 2007. 07. 30 : 탄천일반산업단지 지정 고시(충청남도고시 제2007-180호)
- 2007. 10. 30 : 탄천일반산업단지 지정변경 고시(충청남도고시 제2007-287호)
- 2008. 11. 19 : 탄천일반산업단지 지정변경 고시(충청남도고시 제2008-295호)
- 2009. 01. 23 : 탄천일반산업단지 지정변경 고시(충청남도고시 제2009-25호)
- 2009. 01. 23 : 탄천일반산업단지 실시계획 승인 고시(충청남도고시 제2009-26호)
- 2009. 2. 24 : 탄천일반산업단지 지정변경 고시(충청남도고시 제2009-81호)
- 2010. 5. 27 : 탄천일반산업단지 지정변경 고시(충청남도고시 제2010-155호)
- 2010. 5. 27 : 탄천일반산업단지 실시계획 승인 고시(충청남도고시 제2010-156호)
- 2011. 03. 11 : 지정(개발계획) 변경 및 실시계획변경 승인 (충청남도고시 제2011-50,51호)
- 2012. 06. 04 : 지정(개발계획) 변경 및 실시계획변경 승인 (충청남도 고시 제2012-194,195호)
- 2013. 01. 14 : 지정(개발계획) 변경 및 실시계획변경 승인 고시(충청남도 고시 제2013-9호)
- 2013. 07. 02 : 지정(개발계획) 변경 및 실시계획변경 승인 고시(충청남도 고시 제2013-188호)
- 2013. 12. 31 : 지정(개발계획) 변경 및 실시계획변경 승인 고시(충청남도 고시 제2013-467호)
- 2014. 02. 05 : 공주탄천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준공인가(충청남도 고시 제 2014-96호)
- 2015. 01. 23 : 실시계획변경 승인 고시(충청남도 고시 제2015-13호)
- 2015. 01. 30 : 관리기본계획(변경) 승인 고시(충청남도 고시 제2015-17호)
- 2015. 05. 21 : 실시계획변경 승인 고시(충청남도 고시 제2015-141호)
- 2015. 05. 31 : 관리기본계획(변경) 승인 고시(충청남도 고시 제2015-157호)
- 2015. 10. 27 : 실시계획변경 승인 고시(충청남도 고시 제2016-359호)
- 2016. 10. 31 : 관리기본계획(변경) 승인 고시(충청남도 고시 제2016-376호)
- 2018. 03. 20 : 실시계획변경 승인 고시(충청남도 고시 제2018-80호)
- 2018. 03. 20 : 관리기본계획(변경) 승인 고시(충청남도 고시 제2018-81호)
- 2018. 07. 02 : 관리기본계획(변경) 승인 고시(충청남도 고시 제2018-196호)
- 2018. 08. 20 : 실시계획(변경) 승인 정정 고시(충청남도 고시 제2018-270호)
- 2019. 04. 12 : 실시계획(변경) 승인 고시(충청남도 고시 제2019-85호)
- 2019. 04. 12 : 관리기본계획(변경) 승인 고시(충청남도 고시 제2019-87호)
- 2020. 10. 12 : 산업단지계획(변경) 승인 고시(충청남도 고시 제2020-407호)
- 2020. 10. 30 : 산업단지계획(변경) 승인 정정 고시(충청남도 고시 제2020-440호)

2. 관리할 산업단지의 면적에 관한 사항

가. 산업단지 (변경)

구 분	면 적(m ²)			구 성 비(%)	비 고
	기정	변경	변경후		
합 계	996,609.4	-	996,609.4	100.0	
산업 시설 구역	637,451.4	증)14,622.9	652,074.3	65.4	
지원 시설 구역	40,641.8	감)14,622.9	26,018.9	2.6	
공공 시설 구역	196,962.1	-	196,962.1	19.8	
녹지 구역	121,554.1	-	121,554.1	12.2	

나. 용도지역 (변경)

구 분	면 적(m ²)			구성비(%)	비 고
	기정	변경	변경후		
계	996,609.4	-	996,609.4	100.0	
도 시 지 역	996,609.4	-	996,609.4	100.0	
일반공업지역	936,909.4	증)16,000.0	952,909.4	95.6	
준공업지역	59,700.0	감)16,000.0	43,700.0	4.4	

3. 입주대상업종 및 입주기업체의 자격에 관한 사항 (변경)

가. 입주대상업종 (변경)

< 기 정 >

코드	업종명	코드	업종명
C10	식료품 제조업	C25	금속가공제품 제조업
C11	음료 제조업	C26	전자부품, 컴퓨터, 영상,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
C20	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	C29	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
C22	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	C33	기타제품 제조업
C23	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	D35	전기·가스·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
C24	1차금속 제조업	-	유치제한업종

< 변 경 >

코드	업종명	코드	업종명
C10	식료품 제조업	C26	전자부품, 컴퓨터, 영상,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
C11	음료 제조업	C29	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
C20	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	C33	기타제품 제조업
C22	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	D35	전기·가스·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
C23	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	-	유치제한업종 1
C24	1차금속 제조업	-	유치제한업종 2
C25	금속가공제품 제조업	-	-

주1 : 전기·가스·증기, 공기조절 공급업(D35)은 주차장 및 건물 옥상에 배치되는 업종임.

주2 : 한국표준산업분류 제9차 개정(통계청고시 제2007-53호, 2008. 2 시행)

주3 : 유치제한업종 1은 식료품 제조업(C10), 음료제조업(C11),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(C20),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 제품 제조업(C22),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(C23), 1차금속 제조업(C24), 금속가공제품 제조업(C25), 전자부품, 컴퓨터 영상, 음향 통신장비 제조업(C26), 기타기계 및 장비제조업(C29), 기타제품 제조업(C33) 외 제한

주4 : 유치제한업종 2는 식료품 제조업(C10), 음료제조업(C11),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(C23), 1차금속 제조업(C24), 금속 가공제품 제조업(C25), 전자부품, 컴퓨터영상, 음향 통신장비 제조업(C26), 기타기계 및 장비제조업(C29), 기타제품 제조업(C33) 외 제한

나. 입주제한업종 (변경없음)

- 특정수질 유해물질 배출업종(「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」 시행규칙 제4조)
※ 단, 특정수질 유해물질 배출시 별도 배출허용기준 승인고시 또는 개별공장에서 폐수배출시설을 설치하여 1차 처리 후 관련법 규정의 배출허용 기준을 준수하여 처리하는 경우 가능
-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업종(「대기환경보전법」 시행규칙 제4조)
※ 단, 특정대기 유해물질 배출시 해당 개별공장에서 대기오염방지 시설을 설치하여 1차 처리 후 관련법 규정의 배출허용 기준을 준수하여 처리하는 경우 가능
- 기타 환경영향평가서상 입주제한업종

다. 입주자격 (변경없음)

- 「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」 시행령 제2조(공장의범위)의 규정에 적합한 공장으로 동법 시행령 제6조(산업단지의 입주자격)의 규정에 의거 입주 자격을 갖춘 자

라. 입주우선순위 (변경없음)

- 특정 유해물질 배출이 없거나 환경영향이 적은 업체
- 재정능력이 확실하고 지역경제 발전에 파급효과가 큰 업체
- 수도권 및 타 지역으로부터 공장 및 본사 이전(확장) 업체
- 전문화가 가능한 연관업체 또는 수출업체
- 공해유발이 적은 고부가가치 제조업체
- 지역주민 우선고용, 상시 고용인원 및 고용창출 효과가 큰 업체
- 농·수·축산물 등 현지 부존자원을 활용하는 업체
- 품질경영 및 기술우수기업, 수출 등 유망중소기업, 재무구조 건실기업으로 자체 자금을 조달하여 입주하고자 하는 업체

마. 입주절차 (변경없음)

- ① 입주신청 : 관리기관의 소정양식에 의한 입주신청서 제출
- ② 입주심사 : 서류심사
- ③ 면 접 : 관리기관의 입주심사 및 면접
- ④ 입주계약 : 공주시와 입주공간 확정 및 입주계약
- ⑤ 입 주

바. 태양광 발전사업 (변경없음)

- 단지 내 기존 공장 주차장 및 건축물(옥상, 벽면 등)을 이용한 태양광발전시설 설치를 위한 사업

4. 산업단지안의 용지의 용도별 구역에 관한 사항

가. 용도별 구역 (변경)

1) 산업시설구역 (변경)

도면 번호	가구 번호	면 적(m ²)			획 지					비 고
		기정	변경	변경후	위 치		면 적(m ²)			
					기정	변경	기정	변경	변경후	
계		637,451.4	증14,622.9	652,074.3	-	-	637,451.4	증)14,622.9	652,074.3	
A	A1	16,149.0	-	16,149.0	1	1	6,217.1	-	6,217.1	(C10,C11)
					2	2	4,960.4	-	4,960.4	(C10,C11)
					3	3	4,971.5	-	4,971.5	(C10,C11)
	A2	26,306.4	-	26,306.4	1	1	6,583.4	-	6,583.4	(C20)
					2	2	6,498.9	-	6,498.9	(C20)
					3	3	6,620.2	-	6,620.2	(C20)
					4	4	6,603.9	-	6,603.9	(C20)
	A3	61,671.9	-	61,671.9	1	1	61,671.9	-	61,671.9	(C20)
	A4	59,931.9	-	59,931.9	1	1	23,354.2	-	23,354.2	(C20)
					2	2	6,612.0	-	6,612.0	(C20,C22)
					3	3	6,824.7	-	6,824.7	(C25,C29)
					4	4	9,917.0	-	9,917.0	(C25)
					5	5	6,612.0	-	6,612.0	(C25,C33)
					6	6	6,612.0	-	6,612.0	(C20)
	A5	61,805.1	-	61,805.1	1	1	61,805.1	-	61,805.1	(C20)
	A6	6,924.8	-	6,924.8	1	1	4,032.0	-	4,032.0	(C20)
					2	2	2,892.8	-	2,892.8	(C20)
	A7	14,085.5	-	14,085.5	1	1	8,925.0	-	8,925.0	(C20)
					2	2	5,160.5	-	5,160.5	(C20)
	A9	102,085.3	-	102,085.3	1	1	69,027.3	-	69,027.3	(C20)
					2	2	33,058.0	-	33,058.0	(C20)
	A10	18,942.7	-	18,942.7	1	1	6,542.6	-	6,542.6	(C24)
					2	2	6,612.1	-	6,612.1	(C24)
					3	3	5,788.0	-	5,788.0	(C24)
	A11	17,923.1	-	17,923.1	1	1	9,917.1	-	9,917.1	(C20,C22)
					2	2	8,006.0	-	8,006.0	(C20,C22)
	A12	135,610.3	-	135,610.3	1	1	135,610.3	-	135,610.3	(C23,C26,C29)
	A13	41,234.5	-	41,234.5	1	1	15,067.0	-	15,067.0	유치제한업종
2					2	16,250.5	-	16,250.5		
3					3	9,917.0	-	9,917.0		
A14	51,069.0	-	51,069.0	1	1	8,263.7	-	8,263.7	(C20)	
				3	3	8,265.0	-	8,265.0	(C20)	
				2	2	12,604.3	-	12,604.3	(C20)	
				4	4	16,977.0	-	16,977.0	(C20)	
				5	5	4,959.0	-	4,959.0	(C20)	
A15	7,014.6	-	7,014.6	1	1	7,014.6	-	7,014.6	(C24)	
A16	16,697.3	-	16,697.3	1	1	10,086.3	-	10,086.3	(C20)	
				2	2	6,611.0	-	6,611.0	(C20)	
A17	-	증) 9,354.9	9,354.9	-	1	-	증) 4,677.5	4,677.5	유치제한업종2	
				-	2	-	증) 4,677.4	4,677.4		
A18	-	증) 5,268.0	5,268.0	-	1	-	증) 2,634.0	2,634.0	유치제한업종1	
				-	2	-	증) 2,634.0	2,634.0		

2) 지원시설구역 (변경)

도면 번호	가구 번호	면 적(m ²)			획 지					비고
		기정	변경	변경후	위 치		면 적(m ²)			
					기정	변경	기정	변경	변경후	
계		40,641.8	감)14,622.9	26,018.9			40,641.8	감)14,622.9	26,018.9	
B	B1	9,354.9	감) 9,354.9	-	1	1	2,273.8	감) 2,273.8	-	산업시설용지 A17
					2	2	2,274.5	감) 2,274.5	-	
					3	3	2,274.2	감) 2,274.2	-	
					4	4	2,532.4	감) 2,532.4	-	
	B2	7,409.5	-	7,409.5	1	1	1,852.1	감) 926.0	926.1	
					2	2	1,851.7	-	1,851.7	
					3	3	3,705.7	-	3,705.7	
					-	4	-	증) 926.0	926.0	
	B3	6,570.4	-	6,570.4	1	1	1,608.6	-	1,608.6	
					2	2	1,692.6	-	1,692.6	
					3	3	1,606.4	-	1,606.4	
					4	4	1,662.8	-	1,662.8	
	B4	1,666.8	-	1,666.8	1	1	1,666.8	-	1,666.8	
	B5	3,137.6	-	3,137.6	1	1	1,569.1	-	1,569.1	
					2	2	1,568.5	-	1,568.5	
	B6	7,234.6	-	7,234.6	1	1	1,445.5	-	1,445.5	
					2	2	1,444.7	-	1,444.7	
					3	3	1,444.2	감) 479.5	964.7	
					4	4	1,450.1	-	1,450.1	
					5	5	1,450.1	감) 485.3	964.8	
					-	6	-	증) 964.8	964.8	
	B7	5,268.0	감) 5,268	-	1	1	1,317.1	감) 1,317.1	-	산업시설용지 A18
					2	2	1,316.9	감) 1,316.9	-	
					3	3	1,317.1	감) 1,317.1	-	
					4	4	1,316.9	감) 1,316.9	-	

3) 공공시설구역 (변경없음)

도면 번호	가구번호	면 적(m ²)	획 지		비고
			위 치	면 적(m ²)	
	합계	7,822.0	-	7,822.0	
B	B4	2,045.5	1	2,045.5	
	B8	3,688.8	1	3,688.8	
	B9	2,087.7	1	2,087.7	

나. 용도별 분양계획 (변경)

구분	면적(m)			구성비 (%)	분양여부(m)	
	기정	변경	변경후		유상	무상
합 계	996,609.4	-	996,609.4	100.0	678,093.2	318,516.2
산 업 시 설 구 역	637,451.4	증) 14,622.9	652,074.3	65.4	652,074.3	-
산 업 시 설 용 지	637,451.4	증) 14,622.9	652,074.3	65.4	652,074.3	-
식료품, 음료 제조업(C10, C11)	16,149.0	-	16,149.0	1.6	16,149.0	-
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(C20)	370,611.5	-	370,611.5	37.2	370,611.5	-
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(C20),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(C22)	24,535.1	-	24,535.1	2.6	24,535.1	-
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(C23), 전자부품, 컴퓨터, 영상, 음향 통신장비 제조업(C26), 기계 및 장비 제조업(C29)	135,610.3	-	135,610.3	13.6	135,610.3	-
1차금속 제조업(C24)	25,957.3	-	25,957.3	2.6	25,957.3	-
금속가공제품 제조업(C25), 기타제품 제조업(C33)	6,612.0	-	6,612.0	0.7	6,612.0	-
금속가공제품 제조업(C25)	9,917.0	-	9,917.0	1.0	9,917.0	-
금속가공제품 제조업(C25) 기타기계 및 장비 제조업(C29)	6,824.7	-	6,824.7	0.7	6,824.7	-
유치제한업종1	41,234.5	증) 5,268.0	46,502.5	4.7	55,857.4	-
유치제한업종2	-	증) 9,354.9	9,354.9	0.9	9,354.9	-
지 원 시 설 구 역	40,641.8	감) 14,622.9	26,018.9	2.6	26,018.9	-
지 원 시 설 용 지	40,641.8	감) 14,622.9	26,018.9	2.6	26,018.9	-
공 공 시 설 구 역	196,962.1	-	196,962.1	19.8	-	196,962.1
도	128,166.1	-	128,166.1	12.9	-	128,166.1
주 차 장	7,822.0	-	7,822.0	0.8	-	7,822.0
보 행 자 전 용 도 로	909.8	-	909.8	0.1	-	909.8
공 공 공 지	989.2	-	989.2	0.1	-	989.2
폐 수 종 말 처 리 시 설	8,690.7	-	8,690.7	0.9	-	8,690.7
저 수 지	6,330.4	-	6,330.4	0.6	-	6,330.4
배 수 지	3,808.3	-	3,808.3	0.4	-	3,808.3
가 압 장	141.7	-	141.7	0.0	-	141.7
방 수 설 비	1,188.2	-	1,188.2	0.1	-	1,188.2
하 천	34,310.3	-	34,310.3	3.4	-	34,310.3
체 육 시 설	4,605.4	-	4,605.4	0.5	-	4,605.4
녹 지 구 역	121,554.1	-	121,554.1	12.2	-	121,554.1
근 린 공 원	68,034.9	-	68,034.9	6.8	-	68,034.9
소 공 원	7,010.2	-	7,010.2	0.7	-	7,010.2
완 충 녹 지	46,509.0	-	46,509.0	4.7	-	46,509.0

※ 유치제한업종1은 식료품 제조업(C10), 음료제조업(C11),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(C20),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 제품 제조업(C22),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(C23), 1차금속 제조업(C24), 금속가공제품 제조업(C25), 전자부품, 컴퓨터영상, 음향 통신장비 제조업(C26), 기타기계 및 장비제조업(C29), 기타제품 제조업(C33) 외 제한
 ※ 유치제한업종2는 식료품 제조업(C10), 음료제조업(C11),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(C23), 1차금속 제조업(C24), 금속가공제품 제조업(C25), 전자부품, 컴퓨터영상, 음향 통신장비 제조업(C26), 기타기계 및 장비제조업(C29), 기타제품 제조업(C33) 외 제한

다. 토지 등의 관리처분 계획 (변경)

1) 단지내 (변경)

- 기 정

구분	면적 (m)	구성비 (%)	분양여부(m)		관리계획
			유상	무상	
합 계	996,609.4	100.0	678,093.2	318,516.2	
산 업 시 설 구 역	637,451.4	63.9	637,451.4	-	
산 업 시 설 용 지	637,451.4	63.9	637,451.4	-	일반분양 수요자 관리
식료품, 음료 제조업(C10, C11)	16,149.0	1.6	16,149.0	-	
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(C20)	370,611.5	37.1	370,611.5	-	
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(C20),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(C22)	24,535.1	2.5	24,535.1	-	
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(C23), 전자제품, 컴퓨터, 영상 음향 통신장비 제조업(C26), 기계 및 장비 제조업(C29)	135,610.3	13.6	135,610.3	-	
1차금속 제조업(C24)	25,957.3	2.6	25,957.3	-	
금속가공제품 제조업(C25), 기타제품 제조업(C33)	6,612.0	0.7	6,612.0	-	
금속가공제품 제조업(C25)	9,917.0	1.0	9,917.0	-	
금속가공제품 제조업(C25), 기타기계 및 장비 제조업(C29)	6,824.7	0.7	6,824.7	-	
유치제한업종	41,234.5	4.1	41,234.5	-	
지 원 시 설 구 역	40,641.8	4.1	40,641.8	-	
지 원 시 설 용 지	40,641.8	4.1	40,641.8	-	일반분양 수요자 관리
공 공 시 설 구 역	196,962.1	19.8	-	196,962.1	
도 로	128,166.1	12.9	-	128,166.1	공주시장 관리
주 차 장	7,822.0	0.8	-	7,822.0	공주시장 관리
보 행 자 전 용 도 로	909.8	0.1	-	909.8	공주시장 관리
공 공 공 지	989.2	0.1	-	989.2	공주시장 관리
폐 수 종 말 처 리 시 설	8,690.7	0.9	-	8,690.7	공주시장 관리
저 수 지	6,330.4	0.6	-	6,330.4	공주시장 관리
배 수 지	3,808.3	0.4	-	3,808.3	공주시장 관리
가 압 장	141.7	0.0	-	141.7	공주시장 관리
방 수 설 비	1,188.2	0.1	-	1,188.2	농림축산식품부 관리
하 천	34,310.3	3.4	-	34,310.3	공주시장 관리
체 육 시 설	4,605.4	0.5	-	4,605.4	공주시장 관리
녹 지 구 역	121,554.1	12.2	-	121,554.1	
근 린 공 원	68,034.9	6.8	-	68,034.9	공주시장 관리
소 공 원	7,010.2	0.7	-	7,010.2	공주시장 관리
완 충 녹 지	46,509.0	4.7	-	46,509.0	공주시장 관리

• 변경

구분	면적 (m)	구성비 (%)	분양여부(m)		관리계획
			유상	무상	
합 계	996,609.4	100.0	678,093.2	318,516.2	
산업시설구역	652,074.3	65.4	652,074.3	-	
산업시설용지	652,074.3	65.4	652,074.3	-	일반분양 수요자 관리
식료품, 음료 제조업(C10, C11)	16,149.0	1.6	16,149.0	-	
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(C20)	370,611.5	37.1	370,611.5	-	
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(C20),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(C22)	24,535.1	2.5	24,535.1	-	
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(C23), 전자부품, 컴퓨터 영상 음향 통신장비 제조업(C26), 기계 및 장비 제조업(C29)	135,610.3	13.6	135,610.3	-	
1차금속 제조업(C24)	25,957.3	2.6	25,957.3	-	
금속가공제품 제조업(C25), 기타제품 제조업(C33)	6,612.0	0.7	6,612.0	-	
금속가공제품 제조업(C25)	9,917.0	1.0	9,917.0	-	
금속가공제품 제조업(C25), 기타기계 및 장비 제조업(C29)	6,824.7	0.7	6,824.7	-	
유치제한업종1	46,502.5	4.7	46,502.5	-	
유치제한업종2	9,354.9	0.9	9,354.9	-	
지원시설구역	26,018.9	2.6	26,018.9	-	
지원시설용지	26,018.9	2.6	26,018.9	-	일반분양 수요자 관리
공공시설구역	196,962.1	19.8	-	196,962.1	
도로	128,166.1	12.9	-	128,166.1	공주시장 관리
주차장	7,822.0	0.8	-	7,822.0	공주시장 관리
보행자전용도로	909.8	0.1	-	909.8	공주시장 관리
공공공지	989.2	0.1	-	989.2	공주시장 관리
폐수종말처리시설	8,690.7	0.9	-	8,690.7	공주시장 관리
저수지	6,330.4	0.6	-	6,330.4	공주시장 관리
배수지	3,808.3	0.4	-	3,808.3	공주시장 관리
가압장	141.7	0.0	-	141.7	공주시장 관리
방수설비	1,188.2	0.1	-	1,188.2	농림축산식품부 관리
하천	34,310.3	3.4	-	34,310.3	공주시장 관리
체육시설	4,605.4	0.5	-	4,605.4	공주시장 관리
녹지구역	121,554.1	12.2	-	121,554.1	
근린공원	68,034.9	6.8	-	68,034.9	공주시장 관리
소공원	7,010.2	0.7	-	7,010.2	공주시장 관리
완충녹지	46,509.0	4.7	-	46,509.0	공주시장 관리

※ 유치제한업종1는 식료품 제조업(C10), 음료제조업(C11),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(C20),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 제품 제조업(C22),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(C23), 1차금속 제조업(C24), 금속가공제품 제조업(C25), 전자부품, 컴퓨터영상 음향 통신장비 제조업(C26), 기타기계 및 장비제조업(C29), 기타제품 제조업(C33) 외 제한

※ 유치제한업종2는 식료품 제조업(C10), 음료제조업(C11),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(C23), 1차금속 제조업(C24), 금속가공제품 제조업(C25), 전자부품, 컴퓨터영상, 음향 통신장비 제조업(C26), 기타기계 및 장비제조업(C29), 기타제품 제조업(C33) 외 제한

② 단 지 외(변경없음)

구분	면적 (m)	구성비 (%)	분양여부(m)		관리계획
			유상	무상	
합 계	1,424	100.0	-	1,424	
도 로	925	65.0	-	925	공주시장 관리
하 천	499	35.0	-	499	공주시장 관리

5. 업종별 공장의 배치에 관한 사항 (변경)

가. 배치기준(변경없음)

- 업종별 계열화 및 협동화 효과를 고려 업종별 배치
- 환경적(소음 및 진동, 수질, 대기 및 악취) 측면을 고려한 배치
 - 수질오염 : 고농도 폐수, 유기물 오염수 배출업종은 효율적 폐수처리를 위한 집단배치
 - 대기 및 악취 : 악취발생 예상되는 업종은 풍향을 고려한 업종별 배치
 - 소음 및 진동 : 소음발생 예상되는 업종은 도로를 경계로 격리배치
- 대규모 공장입지와 관련업종 입주에 대비한 탄력적인 배치를 운용하고 부지내 시설물 규모의 변동 및 대체에 대하여도 융통성 있게 배치

나. 업종별 공장배치계획 (변경)

구 분	계				2020. 9. 현재		향후계획	
	업체수		부지면적(m ²)		업체수	부지면적(m ²)	업체수	부지면적(m ²)
	기정	변경	기정	변경				
계	34	37	637,451.4	652,574.3	33	637,451.4	4	14,622.9
C10 식료품제조업 C11 음료제조업	3	3	16,149.0	16,149.0	3	16,149.0	-	-
C20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	20	20	370,611.5	370,611.5	20	370,611.5	-	-
C20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C22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제조업	2	2	24,535.1	24,535.1	2	24,535.1	-	-
C23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C26 전자부품, 컴퓨터, 영상, 음향 통신장비 제조업 C29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	1	1	135,610.3	135,610.3	1	135,610.3	-	-
C24 1차금속 제조업	2	2	25,957.3	25,957.3	2	25,957.3	-	-
C25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C33 기타제품 제조업	1	1	6,612.0	6,612.0	1	6,612.0	-	-
C25 금속가공제품 제조업	1	1	9,917.0	9,917.0	1	9,917.0	-	-
C25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C29 기타기계 및 장비 제조업	1	1	6,824.7	6,824.7	1	6,824.7	-	-
유치제한업종1	3	4	41,234.5	46,502.5	2	41,234.5	2	5,268.0
유치제한업종2	-	2	-	9,354.9	-	-	2	9,354.9
D35 전가가스증기, 공기조절공급업	업체수 중복 미기재	업체수 중복 미기재	건물옥상 (면적중복 미기재)	건물옥상 (면적중복 미기재)	-	-	-	-

주 : 기존 입주업체가 건물 옥상에 태양광발전시설 설치(업체수는 중복으로 미기재)

주 : 업체수는 일부 오기를 정정하는 사항임

주 : 업종별 배치계획도 - <별첨 3> 참조

주 : 전가가스증기, 공기조절 공급업(D35)은 기존 입주 업체의 주차장 및 건물 옥상에 배치되는 업종임 - <별첨4> 참조

6. 지원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(변경없음)

가. 도로 (변경없음)

- 산업단지 지구 내 도로 총괄표

구 분		폭원(m)	노선수	연 장(m)	면 적(m ²)	관리계획	
합계		-	19	7,609	129,075.9	공주시장 관리	
일반 도로	계	-	17	7,456	128,166.1		
	중로	소계	-	13	6,416		120,638.1
		1류	20.75 ~ 24	2	2,190		53,153.4
		2류	15	8	3,712		58,899.7
		3류	13 ~ 13.5	3	514		8,585.0
	소로	소계	-	4	1,040		7,528.0
		2류	8	3	468		4,612.4
		3류	5	1	572		2,915.6
	보행자 전용도로	소로	3류	6	2		153

- 산업단지 지구 외 도로 총괄표

구 분		폭원(m)	노선수	연 장(m)	면 적(m ²)	관리계획
합 계		5	2	97	925	공주시장 관리
일반도로	소로	3류	5	2	97	

나. 주차장 (변경없음)

도면표시 번호	시 설 명	위 치	면 적(m ²)	관리계획
계	-	-	7,822.0	공주시장 관리
1	탄천1 노외주차장	탄천면 안영리 848번지	2,087.7	
2	탄천2 노외주차장	탄천면 안영리 855번지	3,688.8	
3	탄천3 노외주차장	탄천면 안영리 824번지	2,045.5	

다. 공원 (변경없음)

도면표시 번호	공원명	시설의 종 류	위 치	면 적(m ²)	관리계획
계	-	-	-	75,045.1	공주시장 관리
1	탄천1 근린공원	근린공원	안영리 788외 6필지	37,197.7	
2	탄천2 근린공원	근린공원	안영리 806외 10필지	30,837.2	
1	탄천1 소공원	소공원	탄천면 덕지리 729	3,098.5	
3	탄천3 소공원	소공원	탄천면 덕지리 737	3,911.7	

라. 녹지 (변경없음)

도면표시 번호	시 설 명	시설의 종 류	위 치	면 적(m ²)	관리계획
계	-	-	-	46,509.0	공주시장 관리
1	탄천1 완충녹지	완충녹지	탄천면 덕지리 724번지 일원	15,811.3	
2	탄천2 완충녹지	완충녹지	탄천면 덕지리 734번지 일원	1,270.5	
3	탄천3 완충녹지	완충녹지	탄천면 덕지리 736번지 일원	3,543.2	
4	탄천4 완충녹지	완충녹지	탄천면 안영리 853번지 일원	1,115.2	
5	탄천5 완충녹지	완충녹지	탄천면 안영리 850번지 일원	9,161.0	
6	탄천6 완충녹지	완충녹지	탄천면 안영리 849번지 일원	4,548.3	
7	탄천721	완충녹지	탄천면 안영리 800번지 일원	11,059.5	

마. 공공공지 (변경없음)

도면표시 번호	시 설 명	위 치	면 적(m ²)	관리계획
계			989.2	공주시장 관리
1	공공공지	탄천면 안영리 810번지	241.3	
2	공공공지	탄천면 안영리 807번지	254.9	
3	공공공지	탄천면 덕지리 747-1번지	493.0	

바. 수도공급설비 (변경없음)

1) 산업단지 지구 내 수도공급설비(단위시설 : 배수지, 가압장) (변경없음)

도면표시 번호	시 설 명	위 치	면 적(m ²)	관리계획
계			3,950.0	공주시장 관리
1	탄천1 배수지	탄천면 안영리 799번지 일원	3,808.3	
1	탄천1 가압장	탄천면 덕지리 744번지 일원	141.7	

사. 체육시설 (변경없음)

도면표시 번호	시설명	시설의 종 류	위 치	면 적(m ²)	관리계획
계				4,605.4	공주시장 관리
1	탄천1 체육시설	체육시설	탄천면 덕지리 745번지	4,605.4	

아. 하천 (변경없음)

1) 산업단지 지구 내 하천

도면 표시 번호	시 설 명	시설의 종 류	위 치			연 장 (m)	면 적 (m ²)	비 고	관리계획
			기 점	중 점	주 요 경과지				
1	덕지천	소하천	탄천면 안영리 696-14구 일원	탄천면 덕지리 694-1구 일원	탄천일반 산업단지	1,121	15,495.6	도로중복 442m ²	공주시장 관리
2	거리미들천	소하천	탄천면 안영리 765-3구 일원	탄천면 덕지리 628-56천 일원	탄천일반 산업단지	1,027	16,259.7	도로중복 1,950m ²	
3	터골천	소하천	탄천면 안영리 692-11구 일원	탄천면 안영리 765-3구 일원	탄천일반 산업단지	173	2,555.0		

2) 산업단지 지구 외 하천

도면 표시 번호	시 설 명	시설의 종 류	위 치			연 장 (m)	면 적 (m ²)	관리계획
			기 점	중 점	주 요 경과지			
4	덕지천	소하천	남측 지구계	탄천면 덕지리 608-1답 일원	탄천일반산업단지	8	24	공주시장 관리
5	터골천	소하천	탄천면 안영리 692-2구 일원	북측 지구계	탄천일반산업단지	33	475	

자. 우수지 (변경없음)

도면표시 번호	시 설 명	시설의 종 류	위 치	면 적(m ²)	관리계획
계	-	-	-	18,282.7	공주시장 관리
1	우수지	탄천1 저류시설	탄천면 덕지리 746번지 일원	6,330.4	
2	우수지	탄천2 저류시설	탄천면 덕지리 740번지 일원	8,888.3	
3	우수지	탄천3 저류시설	탄천면 안영리 863번지 일원	3,064.0	

차. 방수설비 (변경없음)

도면표시 번호	시 설 명	위 치	면 적(m ²)	관리계획
1	방수설비	탄천면 덕지리 742번지 일원	1,188.2	농림축산식품부 (농어촌공사 관리)

카. 수질오염방지시설 (변경없음)

도면 표시 번호	시 설 명	시설의 종 류	위 치	면 적(m ²)	관리계획
1	탄천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장	폐수종말 처리장	탄천면 덕지리 736번지 일원	8,690.7	공주시장 관리

7. 그밖에 산업단지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(변경)

가. 분양계획 (변경)

구분	기정(m ²)			변경(m ²)			비고
	전체	분양	미분양	전체	분양	미분양	
계	678,093.2	567,925.6	110,167.6	678,093.2	647,624.8	30,468.4	
산업시설용지	637,451.4	557,752.2	79,699.2	652,074.3	637,451.4	14,622.9	
지원시설용지	40,641.8	10,173.4	30,468.4	26,018.9	10,173.4	15,845.5	

주 : 산업시설용지 분양면적(변경)은 계약해제 및 구역오차를 반영한 면적임

나. 입주계획 (변경)

구 분	입 주 내 용						비고	
	계		산업시설구역		지원시설구역			
	업체수	면적(m ²)	업체수	면적(m ²)	업체수	면적(m ²)		
기정	입주업체	32	567,925.6	27	557,752.2	5	10,173.4	
	향후계획	25	110,167.6	7	79,699.2	18	30,468.4	
변경	입주업체	36	647,624.8	31	637,451.4	5	10,173.4	
	향후계획	17	30,468.4	4	14,622.9	13	15,845.5	

주1 : 지원시설구역의 주차장은 무상귀속 대상임.

주2 : 전가가스증기, 공기조절 공급업(D35)은 기존 입주 업체의 주차장 및 건물 옥상에 배치되는 업종임.

다. 태양광에너지 생산 임대계획 (변경없음)

- 임대업종
 - 전기·가스·증기, 공기조절 공급업(D35)
- 임대방법
 - 주차장 및 건축물(옥상, 벽면 등) 유상임대
- 임대기간
 - 「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」 시행령 제48조의4 제2항 규정에 따른 5년 이상(단, 임차인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1년 이상)
- 임대절차
 - 「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」 시행령 제48조의3 제4항 규정에 의함

라. 입지여건 (변경없음)

- 지리적 여건
 - 국토 중심부에 위치하여 전국 어디서나 접근이 용이
 - 행정중심복합도시와 인접하여 무한한 발전잠재력
 - 대전-청주-공주를 연결하는 광역개발권
 - 인근 호남고속철도 남공주역 입지
- 교통 여건
 - 천안-논산간 고속도로 통과(탄천I.C 인접)
 - 대전-당진간, 공주-서천간 고속도로 인접
 - 경부·호남고속도로의 접근 용이
- 기반시설 공급계획

시 설 명		시설계획	비 고
용 수	공 업	기정 : 4,876.8m ³ /일 변경 : 4,998.6m ³ /일(증 121.8m ³ /일)	충남중부광역 상수도 석성정수장 (단지내 배수지 용량 3,000m ³ /12시간)
	생 활	기정 : 268.4m ³ /일 변경 : 259.3m ³ /일 (감 9.1m ³ /일)	
폐수종말처리시설		기정 : 2,264.5m ³ /일 변경 : 2,320.4m ³ /일 (증 55.9m ³ /일)	자체 처리시설 설치 (처리용량 : 3,400m ³ /일)
폐 기 물		기정 : 11,001ton/년 변경 : 11,814ton/년 (증 813ton/년)	전문처리 업체에 전량위탁처리
전 력		기정 : 62,546KVA 변경 : 62,777KVA (증 231KVA)	부여변전소 및 논산변전소 (135,000KVA)
통 신 시 설		기정 : 2,735회선 변경 : 1,865회선 (감 870회선)	공주전화국

마. 구역별 건축할 건축물의 범위 (변경)

1) 산업시설구역 (변경)

-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의 제조업을 영위하기 위한 공장 및 부대시설

(1) 산업시설용지 (변경)

도면 번호	위치	구 분		계 획 내 용
A	A1 (1~3)	용 도	지정용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◦ 「한국표준산업분류」(통계청고시 2007-53)에 의거 중분류로 정한 업종에 따른 공장용지의 건축물 용도 중 C10 식료품 제조업, C11 음료 제조업 ◦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상의 연관업종 (단, 유치업종 50%이상 입주후 허용)
			불허용도	◦ 지정용도 이외의 용도
		건 폐 율		◦ 70% 이하
		용 적 륜		◦ 250% 이하
		높 이	최저층수	◦ 1층
			최고층수	◦ 5층(30m이하)
		배 치		◦ 지형조건 및 주변여건에 따라 다양한 주동형태를 활용하여 단지내부에서 변화감 있는 경관이 되도록 배치 권장
		형 태		◦ 주변 경관과 조화되는 주동 및 지붕형태 권장
		색 채	지붕색상	◦ 벽면색채보다 어두운 고명도·저채도 색상 권장(시행지침 참조)
			벽면색상	◦ 지붕색채보다 밝은 고명도·저채도 색상 권장(시행지침 참조)
		건 축 선		◦ 대로3-1호선변 : 건축한계선 5m(시행지침 참조)
		기타사항		◦ 신재생에너지 설치기준 적용(시행지침 참조)
		A2 (1~4)	용 도	지정용도
	불허용도			◦ 지정용도 이외의 용도
	건 폐 율		◦ 70% 이하	
	용 적 륜		◦ 250% 이하	
	높 이		최저층수	◦ 1층
			최고층수	◦ 5층(30m이하)
	배 치		◦ 지형조건 및 주변여건에 따라 다양한 주동형태를 활용하여 단지내부에서 변화감 있는 경관이 되도록 배치 권장	
	형 태		◦ 주변 경관과 조화되는 주동 및 지붕형태 권장	
색 채	지붕색상		◦ 벽면색채보다 어두운 고명도·저채도 색상 권장(시행지침 참조)	
	벽면색상		◦ 지붕색채보다 밝은 고명도·저채도 색상 권장(시행지침 참조)	
건 축 선			◦ 대로3-1호선변 : 건축한계선 5m(시행지침 참조)	
기타사항			◦ 신재생에너지 설치기준 적용(시행지침 참조)	

도면 번호	위치	구 분		계 획 내 용
A	A3 (1)	용 도	지정용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「한국표준산업분류」(통계청고시 2007-53)에 의거 중분류로 정한 업종에 따른 공장용지의 건축물 용도 중 C20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상의 연관업종 (단, 유치업종 50%이상 입주후 허용)
			불허용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지정용도 이외의 용도
		건 폐 율	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70% 이하
		용 적 륜	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250% 이하
		높 이	최저층수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층
			최고층수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5층(30m이하)
		배 치	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지형조건 및 주변여건에 따라 다양한 주동형태를 활용하여 단지내부에서 변화감 있는 경관이 되도록 배치 권장
		형 태	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주변 경관과 조화되는 주동 및 지붕형태 권장
		색 채	지붕색상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벽면색채보다 어두운高明도·저채도 색상 권장(시행지침 참조)
			벽면색상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지붕색채보다 밝은高明도·저채도 색상 권장(시행지침 참조)
		건 축 선	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대로3-1호선변 : 건축한계선 5m(시행지침 참조)
		기타사항	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신재생에너지 설치기준 적용(시행지침 참조)
		A4 (1~6)	용 도	지정용도
	불허용도		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지정용도 이외의 용도
	건 폐 율	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70% 이하 	
	용 적 륜	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250% 이하 	
	높 이		최저층수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층
			최고층수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5층(30m이하)
	배 치	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지형조건 및 주변여건에 따라 다양한 주동형태를 활용하여 단지내부에서 변화감 있는 경관이 되도록 배치 권장 	
	형 태	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주변 경관과 조화되는 주동 및 지붕형태 권장 	
색 채	지붕색상	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벽면색채보다 어두운高明도·저채도 색상 권장(시행지침 참조) 	
	벽면색상	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지붕색채보다 밝은高明도·저채도 색상 권장(시행지침 참조) 	
건 축 선		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대로3-1호선변 : 건축한계선 5m(시행지침 참조) 	
기타사항		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신재생에너지 설치기준 적용(시행지침 참조) 	

도면 번호	위치	구 분		계 획 내 용
A	A5 (1)	용 도	지정용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「한국표준산업분류」(통계청고시 2007-53)에 의거 중분류로 정한 업종에 따른 공장용지의 건축물 용도 중 C20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상의 연관업종 (단, 유치업종 50%이상 입주후 허용)
			불허용도	◦ 지정용도 이외의 용도
		건 폐 율		◦ 70% 이하
		용 적 륜		◦ 250% 이하
		높 이	최저층수	◦ 1층
			최고층수	◦ 5층(30m이하)
		배 치		◦ 지형조건 및 주변여건에 따라 다양한 주동형태를 활용하여 단지내부에서 변화감 있는 경관이 되도록 배치 권장
		형 태		◦ 주변 경관과 조화되는 주동 및 지붕형태 권장
		색 채	지붕색상	◦ 벽면색채보다 어두운 고명도·저채도 색상 권장(시행지침 참조)
			벽면색상	◦ 지붕색채보다 밝은 고명도·저채도 색상 권장(시행지침 참조)
		건 축 선		◦ 대로3-1호선변 : 건축한계선 5m(시행지침 참조)
		기타사항		◦ 신재생에너지 설치기준 적용(시행지침 참조)
		A6 (1~2)	용 도	지정용도
	불허용도			◦ 지정용도 이외의 용도
	건 폐 율		◦ 70% 이하	
	용 적 륜		◦ 250% 이하	
	높 이		최저층수	◦ 1층
			최고층수	◦ 5층(30m이하)
	배 치		◦ 지형조건 및 주변여건에 따라 다양한 주동형태를 활용하여 단지내부에서 변화감 있는 경관이 되도록 배치 권장	
	형 태		◦ 주변 경관과 조화되는 주동 및 지붕형태 권장	
색 채	지붕색상		◦ 벽면색채보다 어두운 고명도·저채도 색상 권장(시행지침 참조)	
	벽면색상		◦ 지붕색채보다 밝은 고명도·저채도 색상 권장(시행지침 참조)	
건 축 선			◦ 대로3-1호선변 : 건축한계선 5m(시행지침 참조)	
기타사항			◦ 신재생에너지 설치기준 적용(시행지침 참조)	

도면 번호	위치	구 분		계 획 내 용
A	A7 (1~2)	용 도	지정용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「한국표준산업분류」(통계청고시 2007-53)에 의거 중분류로 정한 업종에 따른 공장용지의 건축물 용도 중 C20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상의 연관업종 (단, 유치업종 50%이상 입주후 허용)
			불허용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지정용도 이외의 용도
		건 폐 율	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70% 이하
		용 적 륜	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250% 이하
		높 이	최저층수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층
			최고층수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5층(30m이하)
		배 치	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지형조건 및 주변여건에 따라 다양한 주동형태를 활용하여 단지내부에서 변화감 있는 경관이 되도록 배치 권장
		형 태	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주변 경관과 조화되는 주동 및 지붕형태 권장
		색 채	지붕색상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벽면색채보다 어두운高明도·저채도 색상 권장(시행지침 참조)
			벽면색상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지붕색채보다 밝은高明도·저채도 색상 권장(시행지침 참조)
	건 축 선	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대로3-1호선변 : 건축한계선 5m(시행지침 참조) 	
	기타사항	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신재생에너지 설치기준 적용(시행지침 참조) 	
	A9 (1~2)	용 도	지정용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「한국표준산업분류」(통계청고시 2007-53)에 의거 중분류로 정한 업종에 따른 공장용지의 건축물 용도 중 C20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상의 연관업종 (단, 유치업종 50%이상 입주후 허용)
			불허용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지정용도 이외의 용도
		건 폐 율	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70% 이하
		용 적 륜	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250% 이하
		높 이	최저층수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층
			최고층수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5층(30m이하)
		배 치	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지형조건 및 주변여건에 따라 다양한 주동형태를 활용하여 단지내부에서 변화감 있는 경관이 되도록 배치 권장
		형 태	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주변 경관과 조화되는 주동 및 지붕형태 권장
색 채		지붕색상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벽면색채보다 어두운高明도·저채도 색상 권장(시행지침 참조) 	
		벽면색상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지붕색채보다 밝은高明도·저채도 색상 권장(시행지침 참조) 	
건 축 선	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대로3-1호선변 : 건축한계선 5m(시행지침 참조) 		
기타사항	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신재생에너지 설치기준 적용(시행지침 참조) 		

도면 번호	위치	구 분	계 획 내 용	
A	A10 (1~3)	용 도	지정용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「한국표준산업분류」(통계청고시 2007-53)에 의거 중분류로 정한 업종에 따른 공장용지의 건축물 용도 중 C24 1차금속 제조업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상의 연관업종 (단, 유치업종 50%이상 입주후 허용)
			불허용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지정용도 이외의 용도
		건 폐 율	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70% 이하
		용 적 륜	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250% 이하
		높 이	최저층수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층
			최고층수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5층(30m이하)
		배 치	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지형조건 및 주변여건에 따라 다양한 주동형태를 활용하여 단지내부에서 변화감 있는 경관이 되도록 배치 권장
		형 태	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주변 경관과 조화되는 주동 및 지붕형태 권장
		색 채	지붕색상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벽면색채보다 어두운高明도·저채도 색상 권장(시행지침 참조)
			벽면색상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지붕색채보다 밝은高明도·저채도 색상 권장(시행지침 참조)
	건 축 선	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대로3-1호선변 : 건축한계선 5m(시행지침 참조) 	
	기타사항	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신재생에너지 설치기준 적용(시행지침 참조) 	
	A11 (1~2)	용 도	지정용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「한국표준산업분류」(통계청고시 2007-53)에 의거 중분류로 정한 업종에 따른 공장용지의 건축물 용도 중 C20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C22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상의 연관업종 (단, 유치업종 50%이상 입주후 허용)
			불허용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지정용도 이외의 용도
		건 폐 율	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70% 이하
		용 적 륜	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250% 이하
		높 이	최저층수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층
			최고층수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5층(30m이하)
		배 치	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지형조건 및 주변여건에 따라 다양한 주동형태를 활용하여 단지내부에서 변화감 있는 경관이 되도록 배치 권장
형 태	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주변 경관과 조화되는 주동 및 지붕형태 권장 		
색 채		지붕색상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벽면색채보다 어두운高明도·저채도 색상 권장(시행지침 참조) 	
		벽면색상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지붕색채보다 밝은高明도·저채도 색상 권장(시행지침 참조) 	
건 축 선	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대로3-1호선변 : 건축한계선 5m(시행지침 참조) 		
기타사항	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신재생에너지 설치기준 적용(시행지침 참조) 		

도면 번호	위치	구 분		계 획 내 용
A	A12 (1)	용 도	지정용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「한국표준산업분류」(통계청고시 2007-53)에 의거 중분류로 정한 업종에 따른 공장용지의 건축물 용도 중 C23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C26 전자부품, 컴퓨터, 영상, 음향 통신장비 제조업 C29 기계 및 장비 제조업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상의 연관업종 (단, 유치업종 50%이상 입주후 허용)
			불허용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지정용도 이외의 용도
		건 폐 율	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70% 이하
		용 적 륜	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250% 이하
		높 이	최저층수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층
			최고층수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5층(30m이하)
		배 치	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지형조건 및 주변여건에 따라 다양한 주동형태를 활용하여 단지내부에서 변화감 있는 경관이 되도록 배치 권장
		형 태	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주변 경관과 조화되는 주동 및 지붕형태 권장
		색 채	지붕색상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벽면색채보다 어두운高明도·저채도 색상 권장(시행지침 참조)
			벽면색상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지붕색채보다 밝은高明도·저채도 색상 권장(시행지침 참조)
		건 축 선	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대로3-1호선변 : 건축한계선 5m(시행지침 참조)
		기타사항	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신재생에너지 설치기준 적용(시행지침 참조)
		A13 (1~3)	용 도	지정용도
	불허용도		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지정용도 이외의 용도
	건 폐 율	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70% 이하 	
	용 적 륜	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250% 이하 	
	높 이		최저층수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층
			최고층수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5층(30m이하)
	배 치	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지형조건 및 주변여건에 따라 다양한 주동형태를 활용하여 단지내부에서 변화감 있는 경관이 되도록 배치 권장 	
	형 태	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주변 경관과 조화되는 주동 및 지붕형태 권장 	
색 채	지붕색상	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벽면색채보다 어두운高明도·저채도 색상 권장(시행지침 참조) 	
	벽면색상	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지붕색채보다 밝은高明도·저채도 색상 권장(시행지침 참조) 	
건 축 선		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대로3-1호선변 : 건축한계선 5m(시행지침 참조) 	
기타사항		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신재생에너지 설치기준 적용(시행지침 참조) 	

도면 번호	위치	구 분		계 획 내 용
A	A14 (1~5)	용 도	지정용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「한국표준산업분류」(통계청고시 2007-53)에 의거 증분류로 정한 업종에 따른 공장용지의 건축물 용도 중 C20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상의 연관업종 (단, 유치업종 50%이상 입주후 허용)
			불허용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지정용도 이외의 용도
		건 폐 율	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70% 이하
		용 적 륜	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250% 이하
		높 이	최저층수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층
			최고층수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5층(30m이하)
		배 치	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지형조건 및 주변여건에 따라 다양한 주동형태를 활용하여 단지내부에서 변화감 있는 경관이 되도록 배치 권장
		형 태	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주변 경관과 조화되는 주동 및 지붕형태 권장
		색 채	지붕색상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벽면색채보다 어두운高明도·저채도 색상 권장(시행지침 참조)
			벽면색상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지붕색채보다 밝은高明도·저채도 색상 권장(시행지침 참조)
	건 축 선	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대로3-1호선변 : 건축한계선 5m(시행지침 참조) 	
	기타사항	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신재생에너지 설치기준 적용(시행지침 참조) 	
	A15 (1)	용 도	지정용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「한국표준산업분류」(통계청고시 2007-53)에 의거 증분류로 정한 업종에 따른 공장용지의 건축물 용도 중 C24 1차금속 제조업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상의 연관업종 (단, 유치업종 50%이상 입주후 허용)
			불허용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지정용도 이외의 용도
		건 폐 율	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70% 이하
		용 적 륜	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250% 이하
		높 이	최저층수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층
			최고층수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5층(30m이하)
		배 치	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지형조건 및 주변여건에 따라 다양한 주동형태를 활용하여 단지내부에서 변화감 있는 경관이 되도록 배치 권장
		형 태	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주변 경관과 조화되는 주동 및 지붕형태 권장
색 채		지붕색상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벽면색채보다 어두운高明도·저채도 색상 권장(시행지침 참조) 	
		벽면색상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지붕색채보다 밝은高明도·저채도 색상 권장(시행지침 참조) 	
건 축 선	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대로3-1호선변 : 건축한계선 5m(시행지침 참조) 		
기타사항	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신재생에너지 설치기준 적용(시행지침 참조) 		

도면 번호	위치	구 분		계 획 내 용
A	A16 (1~2)	용 도	지정용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◦ 「한국표준산업분류」(통계청고시 2007-53)에 의거 중분류로 정한 업종에 따른 공장용지의 건축물 용도 중 C20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◦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상의 연관업종 (단, 유치업종 50%이상 입주후 허용)
			불허용도	◦ 지정용도 이외의 용도
		건 폐 율		◦ 70% 이하
		용 적 륜		◦ 250% 이하
		높 이	최저층수	◦ 1층
			최고층수	◦ 5층(30m이하)
		배 치		◦ 지형조건 및 주변여건에 따라 다양한 주동형태를 활용하여 단지내부에서 변화감 있는 경관이 되도록 배치 권장
		형 태		◦ 주변 경관과 조화되는 주동 및 지붕형태 권장
		색 채	지붕색상	◦ 벽면색채보다 어두운高明도·저채도 색상 권장(시행지침 참조)
			벽면색상	◦ 지붕색채보다 밝은高明도·저채도 색상 권장(시행지침 참조)
		건 축 선		◦ 대로3-1호선변 : 건축한계선 5m(시행지침 참조)
		기타사항		◦ 신재생에너지 설치기준 적용(시행지침 참조)

도면 번호	위치		구 분	계 획 내 용		
	기정	변경				
A	-	A17 (1~2)	용 도	지정용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◦ 「한국표준산업분류」(통계청고시 2007-53)에 의거 중분류로 정한 업종에 따른 공장용지의 건축물 용도 중 C10 식료품제조업 C11 음료제조업 C23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C24 1 차금속 제조업 C25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C26 전자부품, 컴퓨터영상, 음향 통신장비 제조업 C29 기타기계 및 장비제조업 C33 기타제품 제조업 외 제한업종 ※ 악취, 소음 유발 업체 입주제한 - 복합악취 : 20이하(「악취방지법 제7조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8조 규정」에 의한 악취 배출허용기준, 공업지역 적용) - 소음 : 주간소음 70 dB(A), 야간소음 65 dB(A)이하 (「환경정책 기본법 제12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2조 규정에 의한 소음환경기준, 일반 “라” 지역 적용) 	
				불허용도	◦ 지정용도 이외의 용도	
			건 폐 율	◦ 70% 이하		
			용 적 륜	◦ 250% 이하		
			높 이	최저층수	◦ 1층	
				최고층수	◦ 5층(30m이하)	
			배 치	◦ 지형조건 및 주변여건에 따라 다양한 주동형태를 활용하여 단지내부에서 변화감 있는 경관이 되도록 배치 권장		
			형 태	◦ 주변 경관과 조화되는 주동 및 지붕형태 권장		
			색 채	지붕색상	◦ 벽면색채보다 어두운高明도·저채도 색상 권장(시행지침 참조)	
				벽면색상	◦ 지붕색채보다 밝은高明도·저채도 색상 권장(시행지침 참조)	
			건 축 선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◦ 중로3-1호선변 : 건축한계선 5m(시행지침 참조) ※ 건축한계선 설치로 확보된 공지에 대해서는 녹지 및 조경공간으로 활용 		
			기타사항	◦ 신재생에너지 설치기준 적용(시행지침 참조)		

도면 번호	위치		구 분	계 획 내 용	
	기정	변경			
A	-	A18 (1~2)	용 도	지정용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◦ 「한국표준산업분류」(통계청고시 2007-53)에 의거 중분류로 정한 업종에 따른 공장용지의 건축물 용도 중 C10 식료품제조업 C11 음료제조업 C20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C22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 제품 제조업 C23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C24 1 차금속 제조업 C25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C26 전자부품, 컴퓨터영상, 음향 통신장비 제조업 C29 기타기계 및 장비제조업 C33 기타제품 제조업 외 제한업종 ※ 약취, 소음 유발 업체 입주제한 - 복합약취 : 20이하(「약취방지법 제7조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8조 규정」에 의한 약취 배출허용기준, 공업지역 적용) - 소음 : 주간소음 70 dB(A), 야간소음 65 dB(A)이하 (「환경정책 기본법 제12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2조 규정에 의한 소음환경기준, 일반 “라” 지역 적용)
				불허용도	◦ 지정용도 이외의 용도
			건 폐 율	◦ 70% 이하	
			용 적 률	◦ 250% 이하	
			높 이	최저층수	◦ 1층
				최고층수	◦ 5층(30m이하)
			배 치	◦ 지형조건 및 주변여건에 따라 다양한 주동형태를 활용하여 단지내부에서 변화감 있는 경관이 되도록 배치 권장	
			형 태	◦ 주변 경관과 조화되는 주동 및 지붕형태 권장	
			색 채	지붕색상	◦ 벽면색채보다 어두운高明도·저채도 색상 권장(시행지침 참조)
				벽면색상	◦ 지붕색채보다 밝은高明도·저채도 색상 권장(시행지침 참조)
			건 축 선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◦ 중로2-11호선변 : 건축한계선 3m(시행지침 참조) ※ 건축한계선 설치로 확보된 공지에 대해서는 녹지 및 조경공간으로 활용 	
			기타사항	◦ 신재생에너지 설치기준 적용(시행지침 참조)	

2) 지원시설구역 (변경)

- 「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2조(정의) 제12호의 규정에 의한 지원기관이 그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건축물과 동법 제44조(입주기업체의 지원)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입주기업체의 지원사업을 위하여 설치하는 건축물
-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시행령 별표14 및 「공주시 도시계획조례」 별표14의 준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외의 건축물으로써 관리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로서 관리권자의 승인을 얻어 설치하는 건축물(세부 사항은 지구단위계획에 따름)

시설명	가구		구분	계획내용	
	기정	변경			
지원 시설 구역	B1 (1~4)	-	용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별표14 및 「공주시 도시계획조례」 별표14의 준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외의 건축물 ○ 「신재생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·이용·보급촉진법」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태양에너지를 이용하여 「전기사업법」 제2조제3호에 따른 발전사업을 하는 데에 필요한 시설로 제9차 한국표준산업분류 중 전기장비 제조업(C28), 전기, 가스,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(D35)에 해당하는 업종 	
			불허 용도	○ 지정용도 이외의 용도	
	B2 (1~3)	B2 (1~4)	규모	건폐율	○ 70% 이하
				용적률	○ 250% 이하
	B3 (1~4)	B3 (1~4)	높이	최저	○ 1층
				최고	○ 5층
	B4 (2)	B4 (2)	배치	○ 지형조건 및 주변여건에 따라 다양한 주동형태를 활용하여 단지내부에서 변화감 있는 경관이 되도록 배치 권장	
	B5 (1~2)	B5 (1~2)		○ 주변 경관과 조화되는 주동 및 지붕형태 권장	
	B6 (1~5)	B6 (1~6)	색채	○ 주변환경과 조화되는 배색으로 자연환경 친화적 색채 권장	
	B7 (1~4)	-	형태	○ 주변 환경과 조화되는 주동 및 지붕형태 권장	
			건축선	-	
			기타	○ 신재생에너지 설치기준 적용(시행지침 참조)	

3) 공공시설구역 (변경없음)

- 지원시설구역 건축물 외의 공공·공용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건축물 및 공공시설
- 산업 및 지원시설용지가 원활한 산업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주차장, 배수지, 저류지, 폐수종말처리시설, 폐기물처리시설 공급시설 등의 건축물

시설명	가 구	구 분	계 획 내 용	
공공 시설 구역	B4 (1) B8 (1) B9 (1)	용도	지정 용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노외주차장 및 부대시설 ※ 부대시설(관리사무소, 휴게소, 공중변소, 간이 매점 및 자동차 장식품 판매점, 노외주차장 관리·운영상 필요한 편의시설) ○ 주차전용 건축물 ※ 건축물 연면적 중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부분의 비율이 95% 이상일 것 (다만, 주차장 외의 용도는 근린생활시설,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한하여 허용하고 허용되는 용도를 설치한 경우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부분의 비율은 70%이상 이어야 함)
			불허 용도	○ 지정용도 이외의 용도
		규모	건폐율	○ 90% 이하
			용적률	○ 250% 이하
		높이	-	
		배치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주차장 1층전면부에 자전거주차장(보관소)을 설치 ○ 노외주차장으로 사용시 도로변의 시각적 차폐가 될수 있도록 차폐 녹지 설치 권장 ○ 주차전용 건축물 건축시 근린생활시설은 최상층부터 배치 	
		형태	○ 담장설치 금지	
		색채	-	
		건축선	-	

시설명	가 구	구 분	계 획 내 용		
공공 시설 구역	C1	용도	지정 용도	◦ 오·폐수종말처리장	
			불허 용도	◦ 지정용도 이외의 용도	
		규모	건폐율	◦ 60% 이하	
			용적률	◦ 250% 이하	
		높이	최저	◦ 1층	
			최고	◦ 4층	
		배치, 형태, 색채, 건축선	◦ 실시계획 내용 수용		
		기 타	◦ 신재생에너지 설치기준 적용(시행지침 참조)		
		C2	용도	지정 용도	◦ 수도공급설비
				불허 용도	◦ 지정용도 이외의 용도
	규모		건폐율	◦ 60% 이하	
			용적률	◦ 250% 이하	
	높이		최저	◦ 1층	
			최고	◦ 4층	
배치, 형태, 색채, 건축선	◦ 실시계획 내용 수용				

4) 녹지구역(변경없음)

- 녹지시설 유지관리에 필요한 건축물(구조물) 및 「도시공원 및 녹지등에 관한 법률」상의 허용 건축물(구조물)

마. 사후관리계획 (변경없음)

1) 목표

- 「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」 및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에 의거 산업단지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도모

2) 세부관리계획 (변경없음)

- 분양용지 관리
 - 분양용지는 「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」 과 산업단지관리지침 및 관리기본계획에 따라 사후 관리
 - 공장 등의 설립을 완료하기전(나대지등)에 분양용지를 처분하는 경우 관리기관이 매수함. 다만, 관리기관이 매수할 수 없을 경우 「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매수신청을 받아 양도할 수 있음
 - 경매, 기타 법률에 의하여 공장 등을 취득하는 자는 관리기관과 입주계약을 체결하고, 법정 기간내 계약 미체결시는 입주자격이 있는 제3자에게 양도하도록 함
 - 관리기관은 입주기업체가 산업용지의 용도를 위반하여 사용하는 때에는 당해 산업용지를 환수할 수 있고, 「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 42조의 따라 입주계약을 해지함
- 환경관리
 - 입주업체의 생산시설이 환경관련 법률에서 정한 배출시설인 경우 설치허가를 득하고, 건축공사시 비산먼지 발생억제시설을 설치하도록 유도하며 공해배출 저하 유도
- 안전관리
 - 입주기업체가 위험물을 저장하거나 서용하고자 할 때에는 관계법령 및 기준을 준수하여야 함
- 기반시설지원
 - 단지내 도로, 전력, 용수, 통신 등 기반시설의 원활한 공급을 위하여 관련기관과 협조 및 사후관리 철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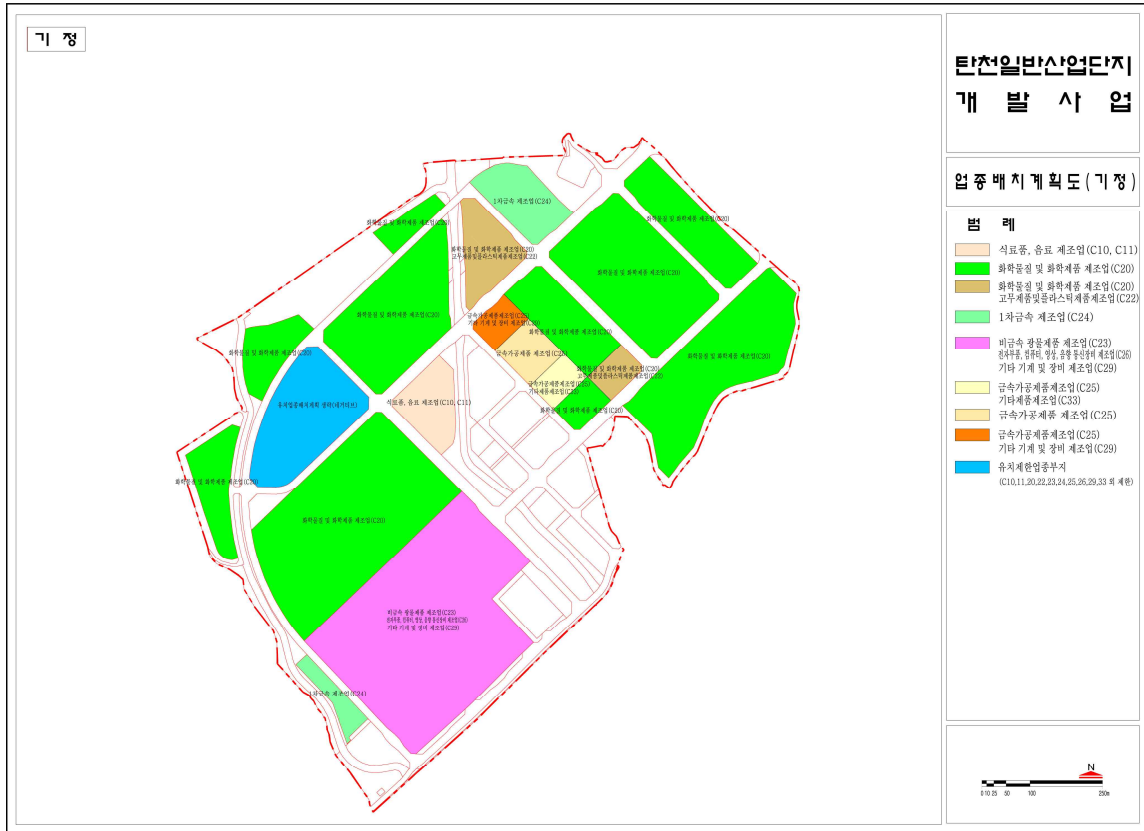
< 용도별 구획도 - 기정 >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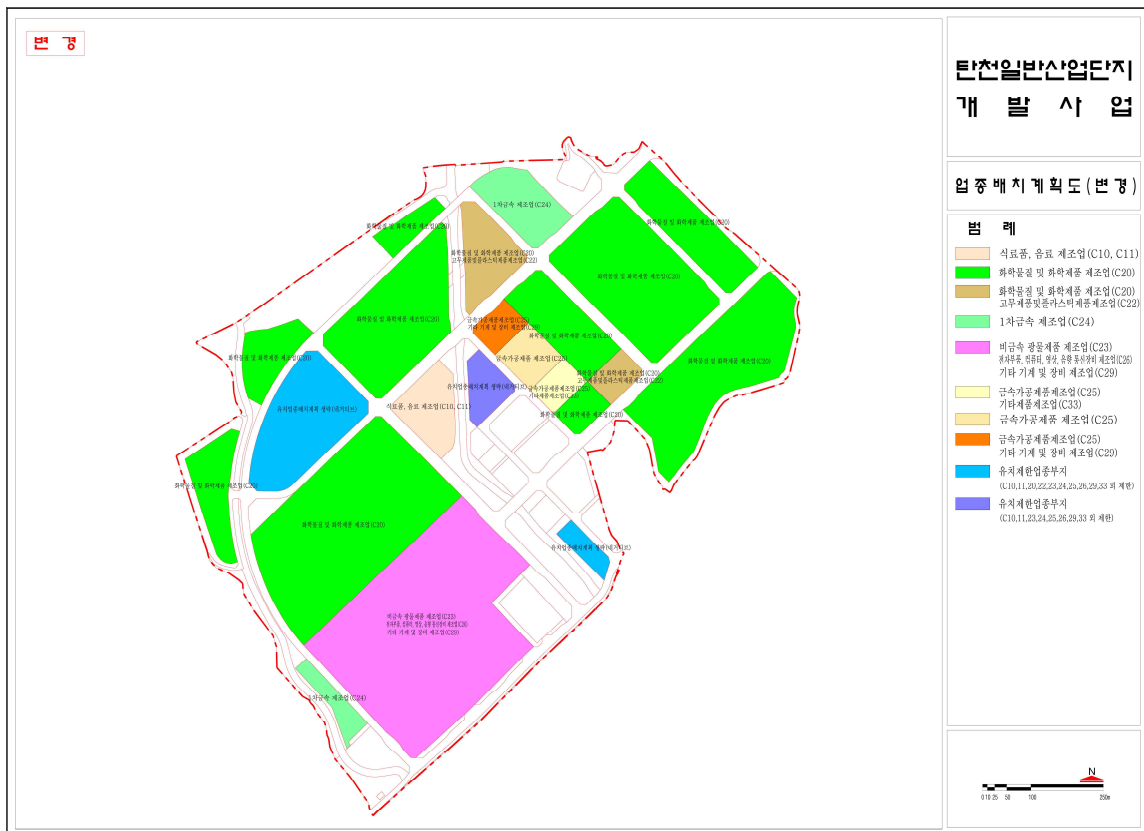
< 용도별 구획도 - 변경 >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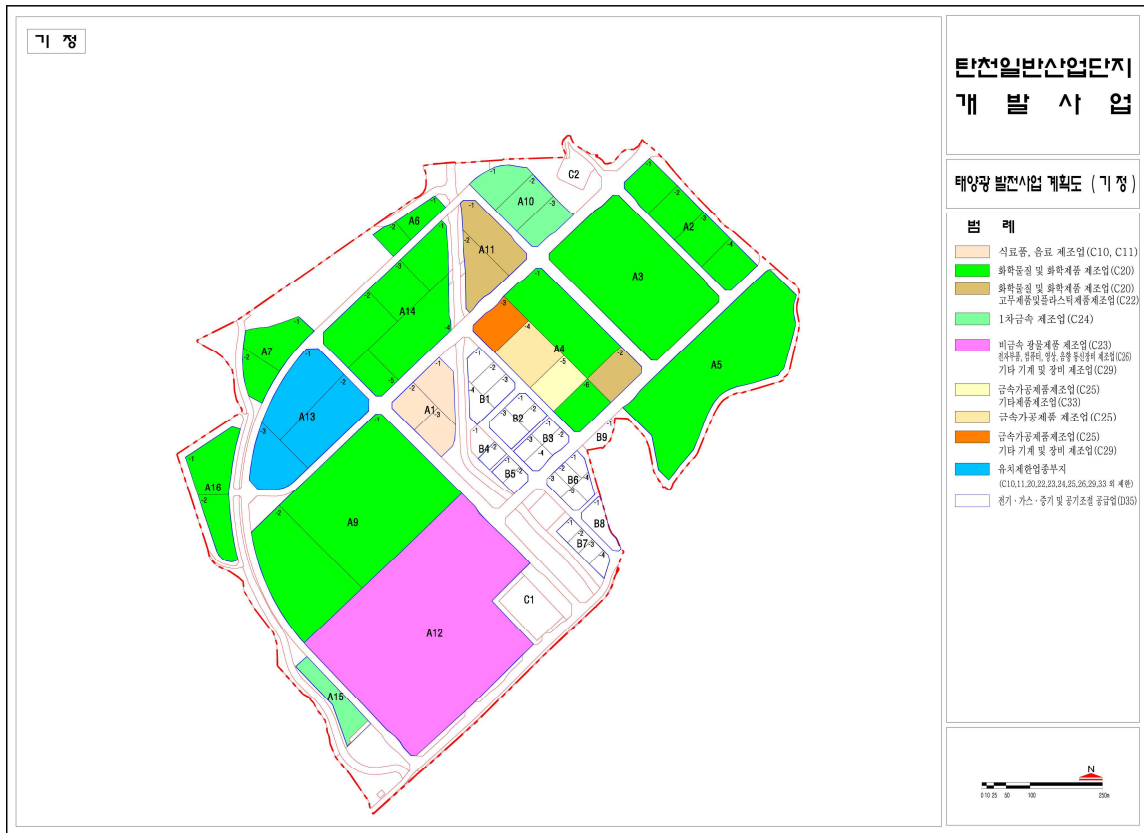
< 업종배치계획도 - 기정 >



< 업종배치계획도 - 변경 >



< 태양광발전계획도 - 기정 >



※ 충청남도 고시 제2019-87호(2019.4.12.) 사항에 따른 태양광 발전계획도 누락사항 정정

< 태양광발전계획도 - 변경 >

